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직 중 성범죄를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로 추가〉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07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직 중 성범죄를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로 추가〉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06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개 요	1
【이춘석의원안】 (국가공무원법)	1
【이춘석의원안】 (지방공무원법)	3
II. 검토의견	5
1. 개정안의 주요내용	5
2. 검토의견	9

I. 개 요

【이춘석의원안】(국가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춘석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9. 20.

다. 회부연월일 : 2024. 9.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몇 가지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수뢰죄, 횡령, 배임 등의 사유는 환수 사유로 규정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누락되어 있어 성범죄 사건이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성범죄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제74조의2제3항제1호의4 및 제1호의5 신설).

【이춘석의원안】(지방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춘석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9. 20.

다. 회부연월일 : 2024. 9.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몇 가지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수뢰죄, 횡령, 배임 등의 사유는 환수 사유로 규정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누락되어 있어 성범죄 사건이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성범죄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제66조의2제3항제1호의4 및 제1호의5 신설).

Ⅱ. 검토의견¹⁾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1)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재직 중에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제3항제1호의4 및 제1호의5 신설).

구분	현행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조문 취지 및 개정 내용이 동일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조문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구분	현행	개정안
	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 1의3. (생략) <u><신설></u> <u><신설></u>	-----. ----- ----- ----- -----. 1. ~ 1의3. (현행과 같음) <u>1의4.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u> <u>1의5. 재직 중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u> <u>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u> <u>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u>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구분	현행	개정안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 1의3. (생략) <u><신설></u> <u><신설></u>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1. ~ 1의3. (현행과 같음) <u>1의4.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u> <u>1의5. 재직 중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u>

구분	현행	개정안
		<u>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u> 가. 「<u>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u>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헌행법 제74조의2제3항은 명예퇴직수당²⁾을 지급받은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제1호),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의 죄³⁾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제1호의2),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⁴⁾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2)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⑤ (생략)

3)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4)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제1호의3)
등을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⁵⁾

개정안은 재직 중에 범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
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예를 받은 경우를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1)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⁶⁾에

5) 그 밖에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제2호) 및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제3호)를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6)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 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규정된 죄를 범하여 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또는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재직 중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7)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①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또는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로 신설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공무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격과 함께 공무원으로 장기간 근속한 사람에 대해 그 동안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보상하려는 공로보상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명예퇴직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요건·방법·액수나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요건에 대해서는 넓은 입법적 재량이 허용되고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9. (생략)

명예퇴직자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있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명예퇴직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⁸⁾

이와 같은 명예퇴직수당의 의의 내지 법적 성격을 감안할 때,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명예퇴직수당의 의의 및 법적 성격, 공무원이 재직 중 범한 성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로 신설하여야 할 필요성, 환수 사유의 내용적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봄.

일반 국민보다 높은 준법 의식과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는 공무

8) [헌법재판소, 2010헌바93, 2010.11.25.,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고,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입법자가 명예퇴직수당 수급권의 구체적인 지급요건·방법·액수 등을 형성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 중에도 공무원으로서 법률적·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가 존재하는 점,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그 환수요건에 관하여 넓은 입법적 재량이 허용되는 점, 형사재판과정에서 해당 사유를 참작한 법관의 양형에 의하여 구체적 부당함이 보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자를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있어서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명예퇴직자’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있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명예퇴직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으로 재직하면서 범한 성범죄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현행법이 재직 중에 범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임용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⁹⁾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¹⁰⁾

9) 재직 중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제도

10)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재직 중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기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하는 것은 명예퇴직수당의 공로보상적 의의 및 법적 성격에 상응하는 합당한 조치로 보이는 바, 개정안은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다만, 개정안 제74조의2제3항제1호의4는 현행법 제69조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제33조제6호의3의 임용결격 사유 중 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로 신설하려는 것인데,

현행 제도는 법 제33조제6호의3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와 나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¹¹⁾) 및 다목(「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직 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로 추가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임.¹²⁾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1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12) 한편, 현행법 제69조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제33조제6호의4의 임용결격 사유를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로 신설하려는 개정안 제74조의2제3항제1호의5는 헌법불합

인사혁신처는 현행법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다만, 명예퇴직수당은 정년 이전 퇴직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보상으로 그 환수 사유를 정할 때 당연퇴직 사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바, 2022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음란물유포¹³⁾ 및 스토킹 범죄¹⁴⁾가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된 점을 감안하여 이들 사유도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행정안전부는 성범죄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퇴직 사유를 고려하여 재직 중 성범죄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성범죄와 관련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법 개정으로 현행법 제33조제6호의4에 따른 임용결격 사유와 동 사유를 내용으로 하는 당연퇴직 사유의 실체적 요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당연퇴직 사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법 제33조제6호의4의 임용결격 사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직 중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를 그에 상응하게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나목)

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다목)

문 의 처
02)6788-5342